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6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258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30,432,070원, 등록세 21,975,740원, 농어촌특별세 14,687,270원, 지방교육세 14,992,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6

가. 고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redacted]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2007. 4. 18. [redacted]시로부터 [redacted]구 [redacted]동 1465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2012. 2. 14. 위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8층, 연면적 49,975.56㎡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31. 학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13. 6. 4. [redacted]와 사이에, [redacted]에 5년간 이 사건 건물 중 13, 14층(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제공하고, [redacted]로부터 발전기금으로 연 3억 6,000만 원을 기부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학협력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10. 원고에게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교육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당초 면제된 취득세 1,096,790,460원, 등록세 104,598,200원, 농어촌특별세 70,813,870원, 지방교육세 71,857,380원, 합계 1,344,059,9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4. [redacted]시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redacted]시는 2014. 9. 26. 위 부과액을 취득세 230,432,070원, 등록세 21,975,740원, 농어촌특별세 14,687,270원, 지방교육세 14,992,680원, 합계 282,087,76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경정된 2014. 4. 10.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6

나 2015. 8.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교육목적에서 [redacted]와 산학협력업무협약을 체결하고, [redacted]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무상 제공하되, 실비변상 및 장학사업지원을 위하여 [redacted]로부터 일정 금액을 기부받은 것일 뿐 임대사업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 12. 31.까지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각 부담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6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redacted]와 사이에 산학협력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 위 협약에 따라 [redacted]가 [redacted]대학교 방송영상과의 2015년도 스토리텔링 전공교재를 감수하고 위 대학교 스마트미디어콘텐츠학부 첨단방송영상계열의 2014년 및 2015년 교화과정심의에 참여하였으며, [redacted]의 A이 2014. 9. 18., 2015. 3. 26. 위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특강을 실시하고, 위 대학교 학생들이 2013. 12. 20.부터 2014. 1. 10.까지 14일간 [redacted]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해당 사업(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redacted]는 5년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대신 원고에게 매년 3억 6,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하였는바, 이와 같이 계약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그 금액도 상당한 고액인 점에 비추어 위 기부금액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6

원고가 [redacted]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실제로 장학금 용도로 특정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redacted]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데, 비록 [redacted]가 [redacted]대학교의 교재를 감수하거나 교과과정심의에 참여하거나 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redacted]의 지원, 교육의 내용과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교육사업은 극히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주된 사용용도는 [redacted] 자체의 사무로 보인다.

③ [redacted]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그 업무성격상 공익적 요소가 있기는 하나 [redacted]의 업무가 원고의 교육목적 달성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④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법이 예외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해당 부동산이 직접적인 교육사업에 이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법인이 취득세 등이 면제된 부동산을 실제로는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면서도 부수적인 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6

재판장 판사 한영표

판사 신수빈

판사 신동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6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 <제11618호, 2013.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